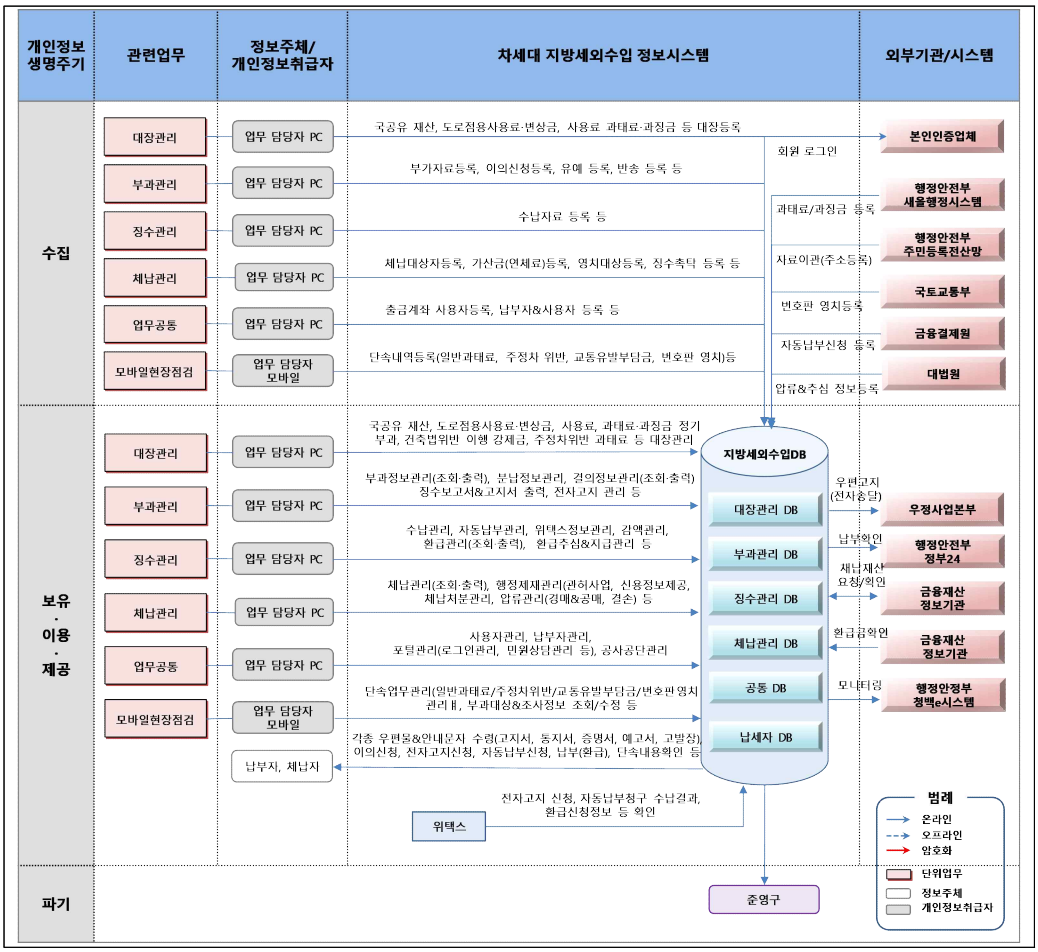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경기도 여주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케이씨에이컨소시엄</td><td>평가
기간</td><td>2026.04.02.
~
2026.04.30.</td><td>평가
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
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
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
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
☑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
변경 일정</td><td>2026. 1. ~
2026. 12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
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·징수·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
•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
• 신규 구축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102,650,562천원
(VAT 포함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행정안전부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2">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
☐ 변경(고도화)
☑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
- 지방세외수입 부과, 징수, 수납, 체납관리 등 내·외부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DB, SW 등 변경사항 반영
-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,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및 정보연계 확대
• 세외수입 관련 법·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
-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․제도 개정에 따른 DB, SW, 코드 변경 적용
- 법개정 관련 응용SW 개선 및 지방세외수입 인프라(HW·상용SW) 증설
-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조직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변환 등 지원
•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
- 지방세외수입정보화 발전협의회, 현장방문, 사용자 교육, 자치단체 요청 등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SW 반영
- 장애예방 및 대응, 시스템 연계, 자료이관 등 기술지원
- 지방세외수입 업무별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운영지원 등</td></tr>
</table>

	운용체계 변경내용	해당없음			
개인정보파일개요	파일명	정보주체 수	개인정보 항목	제3자 제공	개인정보 처리 목적
	(세외수입) 감액관리	9,791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	세외수입 감액관리
	(세외수입) 결손관리	8,220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	세외수입 결손관리
	(세외수입) 과오납관리	2,603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예금주정보(계좌번호, 예금주명)		세외수입 과오납관리
	(세외수입) 부과관리	156,092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	세외수입 부과관리
	(세외수입) 수납관리	147,159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	세외수입 수납처리
	(세외수입) 압류관리	37,382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	세외수입 압류관리
	(세외수입) 체납관리	82,001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	세외수입 체납관리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		1. 개인정보 처리 흐름 -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, 징수, 수납, 체납관리 등을 위해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 - 여주시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/징수/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준영구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. 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			

<table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향평가기준</td><td>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</td><td>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"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
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'22.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. 단, 행정안전부 "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"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" 에서 제시한 "자치단체 점검내용"을 포함하여 평가함.
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의 17개 항목
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의 27개 항목
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기준</td><td>-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"개인정보 보호법령"을 반영
-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"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"을 반영
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
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</td></tr>
<tr><td>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</td><td colspan="2"><u>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</u>
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
『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분석·평가</td><td>무의 정보화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『자동차관리법』 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『국유재산법』 제32조(사용료), 제72조(변상금의 징수)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』 제22조(사용료), 제81조(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

<u>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</u>
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(준영구)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

<u>3. 영향평가 결과 “미흡” 또는 “취약”으로 평가된 사항</u>
-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법하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음
-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음
-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연간 수행계획을 수립・시행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</td><td>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결과</td><td>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8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
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의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
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14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
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36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6개 항목을 제외하고 21개의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
•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</td></tr>
</table>

	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지만,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내부 절차를 공식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함 • 여주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, 실태점검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활동 결과에 대해서 CPO 보고를 진행하고 있지만, 체계성과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활동에 대한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